



즉시 배포용: 2017 년 1 월 1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5 번째 시정 제안서를 2017 년 시정보고에서 발표: 종합적인 윤리 개혁안을 통해 주정부의 청렴성 및 책임감 회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선출직 대표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윤리 의식과 좋은 정부로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10 가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종합적인 개혁안에 포함됩니다.

- 외부 소득을 제한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 의회를 확립하는 주 헌법 개정 추진.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주 헌법 개정 추진.
- 외부 소득을 얻기 전에 주 의회 의원에게 자문 의견을 요구하도록 요청.
-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Loophole)”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 추진.
- 공공 자금 조달 및 여러 가지 다른 선거 자금 개혁 법안 제정.
-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산 공개 요건 적용.
- 뉴욕주 정보공개법 (State Freedom of Information Law, FOIL)의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증진된 투명성 홍보.
-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비영리 법인에 대한 뉴욕주 감찰관 (State Inspector General)의 권한 확대.
- 항만청 (Port Authority) 및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를 위한 새로운 감찰관직 신설.
- 주정부 조달 절차에 대한 감독 강화.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다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올버니에서는 그 신뢰를 배반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얻은 신뢰, 그리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들이 법의 완전한 테두리 내에서 처벌되며, 우리는 그들을 검거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가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사직에 취임한 이래, Cuomo 주지사는 주정부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킨 2011년 공공 청렴 개혁법 (Public Integrity Reform Act)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윤리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 왔습니다. 이 끊임없는 노력은 2010년 시민 연합 (Citizens United) 대 연방 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판결에 의해 완화된 정치적 선거 운동으로부터 독립된 지출 (independent expenditures)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법안과 자유로운 정치적 선거 운동의 최종 조정을 포함하여 선거, 로비, 법집행에 대한 개혁을 보다 더 전진시키기도록 작년 주 의회 (State Legislature)와 주지사의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정부에서 부패한 행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인 윤리 강령을 통해, 올해 주지사는 이 실적을 토대 삼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다음과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부 소득을 제한하는 주 헌법 개정 추진

의회의 파트 타임 구조는 다양한 배경과 대중에게 봉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주 의원들의 잠재적인 이해 관계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민간 사업 간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 의원의 외부 소득을 기본급의 15 퍼센트로 제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15 퍼센트 한도는 연방 정부가 연방 의회 의원의 외부 소득에 부과하는 한도와 동일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주 헌법 개정 추진

현재의 임기 제한의 경우, 2년마다 주 의회 의원들은 재선거를 치르도록 요구받지만, 재임할 수 있는 임기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의회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위해 4년 간의 주 의원 임기를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된 주 헌법 개정안은 또한 신입 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8년으로 제한하며 뉴욕주 전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임기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외부 소득을 얻기 전에 주의회 의원에게 자문 의견을 요구하도록 요청

현재 주 의원들은 그 수입이 일반 대중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한 이해 관계의 충돌 여부에 대한 분석이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민간 사업체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정부의 경우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 관계의 충돌을 확인 분석에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 의원들은 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외부 소득에 대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고, 위원회는 그런 의견을 제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 의원들은 내재적인 갈등으로 인한 생각 속에서 지도를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지사는 모든 주 의원들이 외부 소득을 얻기 전에 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문 의견을 구해야한다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소득 및 이해 관계의 충돌에 관한 심의 및 논의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의 피지명자가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부 활동의 보상을 사안별로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우리의 선출된 대표들을 인도해 주며, 이해 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선출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oophole) 종식**

부자들편에 서지 않고 공개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 법은 기업과 개인이 뉴욕주 후보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거법이 해석되는 별난 방식으로 인해 부유한 개인 및 회사는 뉴욕주의 선거자금 기부 한도를 피하기 위해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자금법의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Loophole)”은 특별 이익이 기부 한도와 공시 요구 사항을 피해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절차 속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뉴욕 주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지사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위한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유한 책임 회사를 이용한 법률상의 헛점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Loophole)을 종식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산 공개 요건 적용**

뉴욕주 선출직 공무원들만이 이해 관계의 갈등이나 잠재적 갈등에 직면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선출직 공무원 및 지역 자치체의 대리인은 동등하게 그런 우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공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지사는 모든 카운티 행정책임자, 카운티 매니저, 카운티 감독위원회 (County Boards of Supervisors) 위원장 뿐만 아니라 정부 급여로 연간 5 만 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공공 윤리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 JCOPE) 또는 뉴욕주에서 승인한 유사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공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뉴욕주 공무원들처럼 그들의 재산 공개 진술서에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중에게 정부 서비스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중을 확신시키는 데 햇빛은 오래 비추어져야 합니다.

### **공공 자금 조달 및 추가적인 선거 자금 개혁 법안 제정**

매일 일반 뉴욕 주민들은 우리의 정치 체제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후보자는 적은 금액보다 큰 액수의 기부금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액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치적 선거운동을 위한 공공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소액 기부금과 공적 자금을 조화시키는 자발적인 공공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택받은 소수 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뉴욕주 법은 개인 및 기업의 “가계비 (housekeeping)” 계정에 무제한의 기부금의 허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비 선거 운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그 대신에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다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선거자금 모금 활동가 (bundler)”라고 하는 선거 운동의 중개인이 선거자금 모금 활동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단일 선거 운동에 개인 기부금을 모아 큰 액수의 한 묶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아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가계비 (housekeeping) 계정에 25,000 달러의 기부금 한도를 책정하고 “선거자금 모금 활동가 (bundler)”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정보공개법 (State Freedom of Information Law)의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증진된 투명성 홍보

뉴욕주 정보공개법 (New York Freedom of Information Law)은 정부 기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주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특정 기록의 사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정부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Law)의 종합적인 개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은 기업의 경영진들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지사는 정보공개법 (FOIL)이 주 의회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살리고 주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FOIL)과 뉴욕주의 공개 회의법 (state's Open Meetings Law)을 의회 윤리위원회 (Legislative Ethics Commission) 뿐만 아니라 JCOPE 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감찰관의 권한 확대

뉴욕주의 감찰관은 주 정부, 그 직원, 주정부와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뉴욕 시립 대학교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그 계열 법인인 비영리 단체들에서 그리고 그 내부에서 재정적인 남용 사례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 감찰관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과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내에서 이러한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은 현재 대학과 협력 관계에 있는 비영리 계열사에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지사는 이러한 범인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감찰관의 관할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 중입니다. 감찰관은 부패, 사기, 범죄 활동, 이해 관계의 충돌 또는 각 대학교 및 그 계열사 내의 남용 등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며, 기소를 위해 이들 법인 내의 잠재적인 범죄 증거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을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과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모든 뉴욕주 관련 조달 및 재무 통제 정책의 시행 및 집행을 포함하여 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찰관은 각 대학의 모든 비영리 계열사들의 정책 및 토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 **항만청 (Port Authority) 및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를 위한 새로운 감찰관직 신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관련 항만청 (Port Authority) 업무와 관계된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기소할 책임을 지는 뉴욕주 항만청 감찰관 (New York Port Authority Inspector General) 직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주 커미셔너 또는 관리 직원들은 관할 기관에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패, 사기, 범죄 활동, 이해 관계의 충돌 또는 남용에 관한 행위를 뉴욕주 항만청 감찰관 (New York Port Authority Inspector General)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 SED)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부패, 사기, 범죄 활동, 이해 관계의 충돌 또는 남용에 대한 혐의를 감독하고 조사 할 수 있는 새롭고 독립적인 감찰관 직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욕주 기관들과 달리, 뉴욕주 교육부 (SED)는 현재 어떤 조사 기관에 의해서도 감독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감찰관 (SED Inspector General)은 상원과 하회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해 임명될 것입니다.

각 감찰관은 또한 기소를 위해 이들 기관 내에서 잠재적인 범죄 증거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조달 업무 개혁안 제정**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 충돌 및 불법 행위는 현재의 조달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매년 수백억 달러가 초과되는, 뉴욕주 및 지역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상당한 금액의 달러로 인해 더욱 높아집니다.

주지사는 그러므로 뉴욕주 전 지역의 조달 관행의 청렴성과 통일성을 감독하며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뉴욕주 조달 직원들이 준비되어 배치되도록 보장하는 최고 조달 책임자 (Chief Procurement Officer) 직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 조달 책임자 (Chief Procurement Officer)는 모범 관행을 수립하며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뉴욕주 기관 및 관련 계열사에 대한 현재 조달 관행을 종합적으로 진두 지휘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효율적이며 결과 중심적이고 올바른 안전 장치로 설계되어 공공 기금이 최대한 청렴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조달 책임자 (Chief Procurement Officer)는 뉴욕주 전 지역의 조달 업무 교육 및 지식 공유 기회의 개발을 이끌며 뉴욕주 감찰관 (State Inspector General)과 협력하여 조달 절차의 청렴성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 계약 입찰자가 조달 절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지사는 뉴욕주 계약 제안에 대한 입찰,

견적 또는 응답을 제출하는 개인, 조직 또는 사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육개월 동안 결정을 보류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 부서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관행 하에서 뉴욕주 감사원장실 (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 법무장관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일반서비스국 (Office of General Services) 등은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하거나 뉴욕주와 복수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계약 관계의 벤더 및/또는 수령자에 대한 지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지불 및 감사를 추적하는 단일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주지사는 정보 기술 사무국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및 최고 조달 책임자 (Chief Procurement Officer)와 함께 대중이 뉴욕주의 계약 및 감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에 협력하고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이들 기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